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송명화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563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10일

발 의 자 : 송명화, 김기대, 김기덕,
김상진, 김수규, 김정태,
김제리, 김종무, 김태수,
김평남, 노승재,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양민규,
이경선, 이상훈, 홍성룡
의원(21명)

1. 제안이유

-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한강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준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지원사업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바. 한강 수상레저시설 등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강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한강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29조의2에 따라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준수 및 관리) ① 한강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법에 따라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6조(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①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한강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에 관하여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한강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2. 한강 수상레저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한강 수상레저 관련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한강 수상레저 관련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 시장은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레저시설 및 관련 편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한강 수상레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1080400000002
------	------------------

미참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송명화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박주용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8.04	
회신일 : 2021.08.09	내용문의 : 02-2180-7954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참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참부 근거 규정
3. 미참부 사유
4. 작성자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7조(지원 사업 등)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비용 발생

※ 제7조(지원사업 등)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8조(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 제9조(교육 및 홍보)는 관련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2021년 서울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조례안	사업명	예산액
안 제7조제1항제1호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	간이구조장비 관리	15,300
안 제7조제1항제3호 (한강 수상레저 관련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한강몽땅 여름축제	961,570
안 제8조 (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4,583,722
안 제9조 (교육 및 홍보)	수상안전교실 운영	26,100
	수상시설물안전관리 (현수막 등 홍보예산 포함)	27,000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1) 추계결과 = 780,000천원(연평균 156,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56,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2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2~2026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2)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780,000천원(연평균 156,000천원)

- 총비용 = 한강 수상레저 관련 대회 개최+한강 수상레저 관련 조사·연구
 = 500,000천원+280,000천원
 = 78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한강 수상레저 관련 대회 개최 (안 제7조제1항제2호)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한강 수상레저 관련 조사·연구 (안 제7조제1항제4호)		56,000	56,000	56,000	56,000	56,000	280,000
	소계(b)		156,000	156,000	156,000	156,000	156,000	780,000
□ 총 비용(b-a)			156,000	156,000	156,000	156,000	156,000	780,000

○ 한강 수상레저 관련 대회 개최 = 500,000천원
 = 연간 수상레저 대회 개최비용×5년
 = 100,000천원×5년

※ 연간 수상레저 대회 개최비용 : 서울시체육회의 ‘2019년 서울컵 윈드서핑 대회 개최’ 예산 100,000천원 적용

○ 한강 수상레저 관련 조사·연구 = 280,000천원
 = 연간 수상레저 관련 조사·연구 비용×5년
 = 56,000천원×5년

※ 연간 수상레저 관련 조사·연구 비용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2014년 수상레포츠 활성화 및 기반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예산 56,000천원 적용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예산분석관 박주용

☎ 02-2180-7954

e-mail : pjooyong@seoul.go.kr